

「요양비」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요양비** : 출산비, 자동복막투석·당뇨병·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가정산소 대여료,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2017년 신설(확대)되는 요양비** : 휴대용 산소발생기·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기준금액 인상 등)

-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 보험료 체납(6월)자, 산재 또는 교통사고에서 이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급여정지 해제 신고 및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원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주요내용

➢ 목적 : 재가치료 급여확대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 내용

①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신설)

- 기준금액 월 20만원 (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

② 기침유발기 대여료 (신설)

- 기준금액 월 16만원 (대여를 월 중에 시작 또는 종료한 경우 일할 계산)

③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카테터) : 급여대상 확대

- (중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확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포함
※ 기준금액 1일 9,000원 (카테터 1일 6개 한도)

④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개선

- 카세트, 배액백,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1일 1개씩 지급
※ 기준금액 상향: 5,640원/일 → 10,420원/일

지원금액

-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구입한 경우 실제 대여·구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구입금액의 100% 지원

제도 문의

요양비 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http://www.nhis.or.kr>
-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2017.11.

재가치료 **요양비** 혜택이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요양비 지원 확대 안내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신설)

기침유발기 대여료 (신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대상 확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금액 인상 등)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확대 내용(2017.1.1. 시행)

1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신설)

- **(급여대상)** 호흡기 장애인 (1·2급) 또는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가정산소치료 대상자가 외부활동 등에 필요한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대여 받아 사용한 경우
- **(급여품목)**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 휴대용 산소실린더는 급여품목 아님
- **(기준금액)** 20만원/월 (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
:: 장비기준 등에 따라 최고금액(24만원/월) 이내 대여 가능 단,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2 기침유발기 대여료 (신설)

- **(급여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자 중에서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
:: 그동안 희귀난치질환(11개 상병)만 건강증진기금으로 전액 국고지원 하였으나, 2017.1.1.부터 대상자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 없음)
- **(급여품목)** 기침유발기 대여료
- **(기준금액)** 16만원/월 (소모품비 포함)
:: 소모품 :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개
• 대여를 월 중에 시작 또는 종료한 경우 일할 계산
- **(대상자 등록 등 절차)**
 - ①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최초 1회)
 - 의료기관에서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원본 제출)
 - :: 중전 보건소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대상자는 자료연계를 통해 일괄 등록
 - :: 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② 기침유발기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
 - 공단에 등록된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확인 후 처방전 발급 단,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 :: 대상 확인 www.nhis.or.kr-요양기관 정보마당
 -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은 1회 최대 6개월까지, 재 처방은 최대 2년까지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 가능

등록 신청서 및 처방전 발행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능)

- ③ 기침유발기 대여
 - 공단에 등록된 제공업소(의료기기 임대업소)와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작성한 후 대여

3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 확대)

- **(급여대상)**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테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단에 등록된 자
 - (중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확대) 선천성, 후천성 (척수손상, 다발경화증 등) 신경인성 방광환자
- **(급여품목)**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 **(기준금액)** 9,000원/일 (1일 6개 한도)
- **(대상자 등록 등 절차)**
 - 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기관에서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원본 제출)
 - :: 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또는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www.nhis.or.kr-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환자 진단 후 직접 등록

등록 신청서 발행의사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 ②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
 - 공단에 등록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확인 후 처방전 발급 단,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 :: 대상 확인 www.nhis.or.kr-요양기관 정보마당
 - 처방기간은 1회 90일 이내

처방전 발행의사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 ③ 소모성 재료 구입
 - 공단에 등록된 공급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4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개선

- **(급여대상)**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자동복막 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카세트, 배액백,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1일 1개씩 지급
- 기준금액 상향: 5,640원/일 → 10,420원/일

요양비 청구

| 구비서류 |

-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 ② 요양비 처방전
- ③ 세무계산서
- ④ 표준계약서(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만 해당)

| 청구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로 구비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 청구기한 |

대여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